

주 택 자 금 상 환 등 증 명 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대출구분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⑤ 저축의 종류	금융기관명				
						상품명				
						가입일				
						계좌번호				
⑥ 주택취득임차일					⑦ 대출일				⑦-1 이자율	
()년도 주택자금 등 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 일	⑩ 원금	⑪ 이자	⑫ 계	⑧ 월별	⑨ 상환 일	⑩ 원금	⑪ 이자	⑫ 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소득공제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⑬× 40%)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등) (인)										

작성 방법

1. ④ 대출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해당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마. 2010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부터 "라의 1)·2)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2009.12.31. 이전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포함)
 - 바. 2010년 1월 1일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사.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부터 "라의 1)·2)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
 -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2) "마"의 주택임차자금 차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2. 「⑤ 저축의 종류」란은 ④ 대출구분 "나", "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택마련저축 명세를 적습니다.
3. 「⑥ 주택취득임차일」란은 ④ 대출구분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4. 「⑦-1 이자율」란은 ④ 대출구분 "바"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 이자율(연으로 환산한 이자율)을 적습니다.